

言論仲裁法の 개정 爭點과 方向

판사/사법연수원 교수 梁慶承

1. 緒言－ 言論仲裁法の 입법 배경과 개정의 필요성 및 方向

가.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(이하 언론중재법)의 제정 경위

▶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규정한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(이하 정기간행물법)과 방송법,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및 민법,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합, 피해구제제도를 單一化한 언론중재법이 2005. 1. 1. 제정되고 2005. 1. 27. 공포되어 2005. 7. 28.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

▶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중핵으로 하는 기존의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개선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요청에 따라 입법화된 것으로서, 언론중재위원회 및 국회의 각 정당,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각자 법률안을 제시하여, 新聞法과 함께 수차의 공청회, 토론회와 여야 간 막판 절충을 거쳐 어렵게 탄생하였음

▶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을 骨幹으로 하고, 여기에 각 정당,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절충·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, 언론중재위원회의 법률안은 본인이 草案을 마련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逐條審議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그 중심적인 내용은, ① 피해구제 수단과 매체별로 나뉜 여러 법령의 통합, ② 언론보도에 대한 免責範圍 설정, ③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소인 고의·과실·위법성 요건의 배제, ④ 언론의 자율적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한 사내 옴부즈만(고충처리인)의 설치, ⑤ 손해배상청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는 조정 대상의 확대, ⑥ 고유 의미의 중재제도 도입, ⑦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소

제기 의제 등 언론중재와 소송의 유기적 연계 강화 등인데, 그 대부분이 입법으로 수용되었음

나. 언론중재법의 개정 필요성

▶ 위와 같이 입법과정에서 각계로부터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고 이를 절충하여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一貫성과 整合성이 다소 미흡한 문제 노정

▶ 법률 시행 전후에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제청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정 불가피

▶ 그 외에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高揚하고 그 조화로운 운영을 통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

다. 개정의 방향

▶ 위 법률은 1981년 언론기본법 시행 이후 20여년에 걸친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시행 경험과 집약된 성과를 토대로, 여야 정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존재의의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, 그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

▶ 현재 일부 조항에 대하여 2006. 6. 29.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(2005헌마165 등)이 내려졌고,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시급한 보완을 요하므로, 단기적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함

▶ 장기적으로는, 강화된 책임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, ① 언론의 면책범위 명확화, ②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단축, ③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감경, ④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 및 독립성·중립성 강화, ⑤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, ⑥ 법원의 심급관할 조정, ⑦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청구제도 개편을 모색·추진하여야 함